



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

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 학생 및 학부모님의 건강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1. 등교증지

통보 주체	유형	격리 및 등교증지 여부	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²⁾ 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								
방역 당국	학생 본인이 확진자 인 경우 [① 참고]	[등교증지] 격리 해제 시까지(검체채취일로부터 7일) ※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(마스크 착용, 사적모임 자제 등)	· 입원·격리 통지서 ·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(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)								
방역 당국	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	[등교증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								
학교	고위험 기저질환자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2">5일 간 2회 검사</th> </tr> <tr> <td>1차</td> <td>2차</td> </tr> <tr> <td>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</td> <td>1차 검사 후 2~3일 뒤</td> </tr> <tr> <td>PCR 검사* 신속항원검사</td> <td>신속항원검사</td> </tr> </table>	5일 간 2회 검사		1차	2차	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	1차 검사 후 2~3일 뒤	PCR 검사* 신속항원검사	신속항원검사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
	5일 간 2회 검사										
1차	2차										
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	1차 검사 후 2~3일 뒤										
PCR 검사* 신속항원검사	신속항원검사										
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[② 참고]	유증상 *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에서 학교장 확인서 를 발급받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가능	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									
[등교증지 권고] 5일 내 2회 검사 실시, 각 검사 결과 '음성' 확인 시까지 ※ 무증상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및 등교증지 권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음											
개인 판단	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	[등교증지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								
	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	[등교증지] 증상 호전 시까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검사장소</td> <td>지정의료기관, 가정</td> </tr> <tr> <td>검사종류</td> <td>신속항원검사</td> </tr> <tr> <td>결과처리</td> <td>양성이면 등교증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기</td> </tr> </table> ※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 중지	검사장소	지정의료기관, 가정	검사종류	신속항원검사	결과처리	양성이면 등교증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기	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※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PCR검사·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		
검사장소	지정의료기관, 가정										
검사종류	신속항원검사										
결과처리	양성이면 등교증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기										

통보 주체	유형	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	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²⁾ 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방역 당국	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[③ 참고]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 ※ 수동감시(10일) 대상자로서 3일 이내 (확진자검체일기준) PCR(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 검사 후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※ 검사 결과(음성) 확인 이후 등교	·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· 입원·격리 통지서,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,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(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) ·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소견서)
	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인 경우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

« 참고 » 상황별 출결 처리

-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,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
: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(단순 재검출)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.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**의심증상**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-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
가.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/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
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**의심증상**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나.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
: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,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. 단, 증상이 있을 경우 '의심증상자'의 등교기준에 따름
-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
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**의심증상**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,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

2.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

-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*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
- *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, 해당 학생의 '등교일'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

3. 코로나19 백신 접종

-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(증빙서류: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),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(증빙서류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) 처리
- * 접종 후 1~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
- 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(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)

«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»

	접종일	접종 후 1일	접종 후 2일	접종 후 3일~
출결	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)	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
증빙자료	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		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

-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

2022. 4. 18.

여산고등학교장